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0512
----------	-------

제출연월일 : 2023. 3. 9.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개선(안 제6조 및 제7조)

-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및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명칭을 사전재난영향평가 및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로 변경함.
- 2) 종전에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신청을 받

은 시·도지사 등이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고,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거친 검토 의견을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나.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34조제1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시키도록 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신설(안 제12조의2 및 제33조제2호의3 신설, 안 제34조제2호·제3호)

1) 초고층 건축물 등의 총괄재난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함.

2) 관리주체는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

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못하도록 함.

3)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및 제31조제1호 신설)

소방청장 등은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완 또는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신설(안 제28조의2 신설)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란”을 “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용도별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전재난영향평가”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하 “설치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사전재난영향평가)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등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허가권자등은 사전재난영향평가의 결과가 허가등의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평가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⑦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청 및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청 시기, 허가등의 범위 등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① 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운영계획
2.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운영계획
3.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계획
4. 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5. 내진설계 및 계층설비 설치계획

6.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7. 소화설비, 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8. 방법·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9.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등”으로, “협의절차”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포함하여야”를 “내용이 포함 되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제3항 중 “때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
2.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제10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본부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도본부장에게 보고”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검토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도본부장은”을 “제2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통보받은 시·도지사는”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 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공동방화관리”를 “공동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을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1.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2. 협의회의 구성·운영
3.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
4.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5.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

6.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운영
7. 제19조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8.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9.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
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을 “절차 및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총괄재난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총괄재난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수(改修)·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조치요구를 하였으나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방화관리상”을 “소방안전관리상”으로 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포함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로 한다.

제2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조치명령) 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또는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지역 내 종합방재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종합방재실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6. 피난안전구역이 제18조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및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9조제5항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도본부장과 시·군·구본부장”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권한의 위임)”을“(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도본부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시·군·구본부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제1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지정”을 “선임”으로 한다.

제33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자

2의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

제4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총괄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5항에 따라 명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p> <p style="padding-left: 2em;">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p> <p style="padding-left: 2em;">나. (생 략)</p> <p>3. ~ 8. (생 략)</p> <p><신 설></p>	<p>제2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 .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용도별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p> <p style="padding-left: 2em;">나. (현행과 같음)</p> <p>3. ~ 8. (현행과 같음)</p> <p>9. “사전재난영향평가”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p>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변경(이하 “설치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사전재난영향평가) ① 초고

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

심의회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
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
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
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
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
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
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
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
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
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
향성검토협의를 요청사항의 전문
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
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등이 시
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
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3항에 따
라 통보받은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재평
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등은 사전재난영향
평가의 결과가 허가등의 신청서
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
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을 하려는 자
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
전재난영향평가 내용을 심의회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평가를

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2. 내진설계 및 계층설비 설치 계획
3.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⑦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청 및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청 시기, 허가등의 범위 등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① 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운영계획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 시설, 피난유도계획

5.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7. 방법·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 체제 구축·운영계획

3.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계획

4. 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5. 내진설계 및 계층설비 설치 계획

6.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7. 소화설비, 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8. 방법·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9.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허가권자등-----
----- 사전재난영
향평가 절차-----

-----.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 유형별 대응·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3.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계획

4.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운영

4의2.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

7. 전기·가스·기계·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내용이 포함되어야 ----.

1.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5.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 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략)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초고층 건축물

8.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 유도에 관한 사항(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등-----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

2.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 상황 매뉴얼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시·군·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도본부장은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 -----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검토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③ 제2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
----- 통보하여야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생략)

2. 공동방화관리, 종합재난관리 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3. ~ 6. (생략)

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8. ~ 10. (생략)

③ ~ ⑤ (생략)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공동소방안전관리-----

3. ~ 6. (현행과 같음)

7.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8. ~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 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 유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할 수 없다.

1.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2. 협의회 구성·운영
3.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
4.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5.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 체제의 구축·운영
6.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운영
7. 제19조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8.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9.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 유도
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 사항

<신 설>

②·③ (생략)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총괄재난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총괄재난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

⑥ -----
----- 절차 및 총괄재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12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수(改修)·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조치요구를 하였으나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이에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 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

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1. ~ 6.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① ~ ④ (생략)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재난·테러 및 안전 정보관

-----.

----- 소방안전관리상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항이 포함되어야 -----.

1. (현행과 같음)

2. -----

리체제

가.·나. (생략)

다. 소방 시설·설비 및 방화
관리 정보

라. (생략)

3. (생략)

<신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소방
안전관리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조치명령) 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또는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지역 내 종합방재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연락이 가능한 정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종합방재실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6. 피난안전구역이 제18조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및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9조제5항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 1. 2. (생 략)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2. (생 략)

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 략)

<신 설>

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 -----

-----.

-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32조(벌칙) -----

-----.

- 1.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선임-----
- 2.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 -----

-----.

- 1. 2. (현행과 같음)
- 2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신 설>

3. (생 략)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검직을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검직한 자

2의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3.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p>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p>
--	------------------------------------